

대구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14612(본소), 2017나3220(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14612(본소), 2017나3220(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938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17. 6. 22.

판결 선고 2017. 7. 2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938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제기된 주위적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대 29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1, 10,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에 관하여 2016. 6. 7.자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경북 의성군 C 대 29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지상 건물, 같은 도면 표시 1, 2, 10,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지상 계단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11, 10,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1995. 10. 14.부터 계쟁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반소 :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F에게 계쟁 부분에 관하여 2015. 10. 14.자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청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네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아래에서 제4행의 "판단" 다음 줄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를 추가한다.

나. 제3쪽 아래에서 제9행의 "철거 및 점유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를 "철거를 구할 수

없다"로,

다. 제3쪽 아래에서 제7행의 "따라서"부터 "이유 있다."까지 기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한다.

『또한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시아버지인 D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5. 2. 원고의 배우자인 E 명의로, 2011. 8. 8. 원고 명의로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피고는 점유개시일 이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전 소유자인 F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계쟁 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시점 이후인 1996. 6. 7.을 점유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계쟁 부분에 관하여 점유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계쟁 부분의 인도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쟁 부분에 관하여 2016. 6. 7.자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제4쪽 아래에서 제3행의 "이유 없다." 다음 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3) 한편 원고는 F이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에 계쟁 부분에 대한 대토로 F 소유의 위 G 토지 중 3㎡를 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F이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백이므로, 그로써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F이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D에게 F 소유의 위G 토지 중 3㎡'를 '계쟁 부분'에 대한 대토로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접벽동의'에 대한 대토로 주었다는 것이다. 접벽동의는 경계침범에 대한 동의라기보다는 민법 제242조에 따른

인접토지 경계선과의 50cm 이격 거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보인다. 그러므로 설령 F이 D에게 접벽동의를 해준 대가로 위 토지 3㎡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F이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용구

판사이인호

판사김나연

별지